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화성시법원 및 시흥시법원 설치 등〉

■ 권철승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21호)

2024. 8.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성 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인구 50만 이상 시·군에 시·군법원 설치 노력	3
2. 화성시법원 및 시흥시법원 설치	6
참고자료. 비용추계 결과	18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권칠승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6. 4.
3. 회 부 일 : 2024. 6.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성시는 2023년 12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의 특례시 기준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요건을 충족하였음.

시흥시도 2023년 12월 기준 총 인구 58만 5,20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의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

그러나 2021년 12월 31일 기준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에 따라 비교할 때 화성시(인구: 88만 7,015명)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있는 부천시(인구: 80만 6,067명)보다 인구가 많고, 시흥시(인구: 51만 2,030명)는 시법원이 있는 파주시(인구: 48만 3,245명)보다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법원조차 없어 해당 주민들이 사법 서비스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의 대도시 기준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시·군으로서 시·군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군에는

시·군법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대법원장이 노력할 것을 규정하는 한편, 동 기준에 부합하는 화성시 및 시흥시에 시법원을 설치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사법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항 신설, 별표 2, 별표 7).

III. 검토의견

1. 인구 50만 이상 시·군에 시·군법원 설치 노력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대법원장으로 하여금 인구가 50만 이상인 시·군으로서 현행법 제2조제1항에 열거된 각급 법원(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과 지방법원의 지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이 구역 내에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군에는 시·군법원을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설치) ① · ② (생략) <u><신설></u>	제2조(설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대법원장은 인구가 50만 이상인 시·군으로서 제1항1)에 열거된 각급 법원이 구역 내에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군에는 시·군법원을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u>

1) 제2조(설치) ①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과 지방법원의 지원(支院) 및 가정법원의 지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한다.

나. 검토의견

- 「법원조직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에 지방법원 지원 및 가정법원 지원 외에 시·군법원(시법원 또는 군법원)을 둘 수 있음.

시·군법원은 소액심판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즉결심판사건, 협의이혼사건 등을 관할하고 있으며(「법원조직법」 제34조), 시·군법원의 판사는 소속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다만, 가사사건에 관하여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장 또는 그 지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법행정사무를 처리함.

법원조직법

제3조(법원의 종류) ②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에 지원(支院)과 가정지원,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하 “시·군법원”이라 한다) 및 등기소를 둘 수 있다. 다만,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은 2개를 합하여 1개의 지원으로 할 수 있다.

제33조(시·군법원) ① 대법원장은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 소속 판사 중에서 그 관할구역에 있는 시·군법원의 판사를 지명하여 시·군법원의 관할사건을 심판하게 한다. 이 경우 1명의 판사를 둘 이상의 시·군법원의 판사로 지명할 수 있다.

② 시·군법원의 판사는 소속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의 지휘를 받아 시·군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가사사건에 관하여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장 또는 그 지원장의 지휘를 받는다.

제34조(시·군법원의 관할) ① 시·군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관할한다.

1.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받는 민사사건
 2. 화해·독촉 및 조정(調停)에 관한 사건
 3.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따른 협의상 이혼의 확인
-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건이 불복신청으로 제1심법원에 계속(係屬)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관할한다. 다만,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받는 사건은 그 시·군법원에서 관할한다.
- ③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범죄사건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을 한다.

- 현재(2024. 8. 12. 기준) 전국에 총 99개 시·군법원이 설치되어 있으며, 각 시·군법원의 설치 지역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별표 2] 시·군법원의 명칭 및 소재지에서, 각 시·군법원의 관할구역은 같은 법 제4조제5호에 따라 [별표 7] 시·군법원의 관할구역에서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대법원장으로 하여금 고등법원, 지방법원, 지방법원의 지원 등 각급 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인구 50만 이상 시·군에 시·군법원을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명시하려는 것으로서, 사법 접근성의 지역별 격차를 완화하고 사법자원의 지역별 배치에 관하여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임.
- 다만, 시·군법원의 설치는 인구 수뿐만 아니라 사건 수, 인근 지역에 각급 법원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성이 보장되는지 여부 등 설치 대상 지역의 지리적 특수성 등 다양한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이루어져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2. 화성시법원 및 시흥시법원 설치

가. 개정안의 내용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별표 1]부터 [별표 10]까지와 같이 규정됨.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2조(설치) ①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과 지방법원의 지원(支院) 및 가정법원의 지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한다. <개정 2016. 12. 27.>

②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하 “시·군법원”이라 한다)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한다.

제4조(관할구역) 각급 법원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다만,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 시·군법원을 둔 경우 「법원조직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관하여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서 해당 시·군법원의 관할구역을 제외한다. <개정 2016. 12. 27.>

1. 각 고등법원·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3
2. 특허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4
3. 각 가정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5
4. 행정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6
5. 각 시·군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7
6. 항소사건(抗訴事件) 또는 항고사건(抗告事件)을 심판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및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의 관할구역: 별표 8
7. 행정사건을 심판하는 춘천지방법원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9
8. 회생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10

- 개정안은 이 중 [별표 2] 및 [별표 7]을 개정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시법원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시법원을 설치하는 한편, 화성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화성시법원을 설치함에 따라 현재 오산시와 화성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려는 것임.

<개정대상 및 개정내용>

개정대상	개정내용
[별표 2] 시·군법원의 명칭 및 소재지	·수원지방법원 화성시법원 설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시법원 설치
[별표 7] 시·군법원의 관할구역	·수원지방법원 화성시법원 관할구역 규정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시법원 관할구역 규정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관할구역 조정

- 개정안에 따라 신설되는 수원지방법원 화성시법원 및 수원지방법원 오산지원 시흥시법원과 관할구역이 조정되는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의 소재지 및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으며, 시행일은 2025년 3월 1일로 규정됨.

<신설·조정 법원의 소재지, 관할구역 및 시행일>

구분	법원명	소재지	관할구역	시행일
신설	수원지방법원 화성시법원	경기도 화성시	경기도 화성시	2025년 3월 1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시법원	경기도 시흥시	경기도 시흥시	
관할 조정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경기도 오산시	경기도 오산시·화성시→ 경기도 오산시	

나. 화성시법원 신설에 따른 영향 분석²⁾

1) 관할인구 및 예상 사건 수

- 개정안에 따라 화성시법원이 설치되는 경우 화성시법원의 관할 인구를 추정해 보면 다음과 같음. 2023년 12월 31일 기준 화성시법원의 관할인구는 94만 4,342명으로, 현재 오산시법원 관할인구(117만 3,998명)의 약 80.4%에 해당함.

<개정안에 따른 화성시법원의 관할인구>

법 원		관할구역	면적(km ²)	인 구(명)
수원지방법원		수원시, 용인시, 오산시, 화성시	1,443	3,446,821
오산시법원		오산시, 화성시	731	1,173,998
화성시법원 신설 시	오산시법원	오산시	43	229,656(19.6%)
	화성시법원	화성시	688	944,342(80.4%)

- 현재 오산시법원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건 중 화성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사건은 신설 화성시법원에서 처리될 것임.

인구비율(신설 화성시법원의 관할인구는 기존 오산시법원 관할 인구의 약 80.4%)에 따라 사건 수를 추정해 보면, 2023년 12월 31일 기준 오산시법원의 연간 사건 수는 총 2만 1,663건이므로, 화성시법원의 예상 사건 수는 이의 80.4%에 해당하는 1만 7,416건으로 예상됨.

2) 법원행정처 분석·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신설 화성시법원 사건 수 추정>

구 분	소액사건	조정사건	독촉사건		즉결사건	계
			전자독촉	민사독촉		
오산시법원(현재)	5,408	223	13,005	1,340	1,687	21,663
오산시법원 (화성시법원 제외)	1,060	44	2,549	263	331	4,247
화성시법원	4,348	179	10,456	1,077	1,356	17,416

- 신설 화성시법원의 관할인구와 예상 사건 수를 다른 시·군법원과 비교해보면, 화성시법원의 관할인구는 현재 전국 1위인 용인시 법원에 이어 전국 2위 규모이며, 사건 수는 전국 1위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됨.

<다른 시·군법원과 관할인구 및 사건 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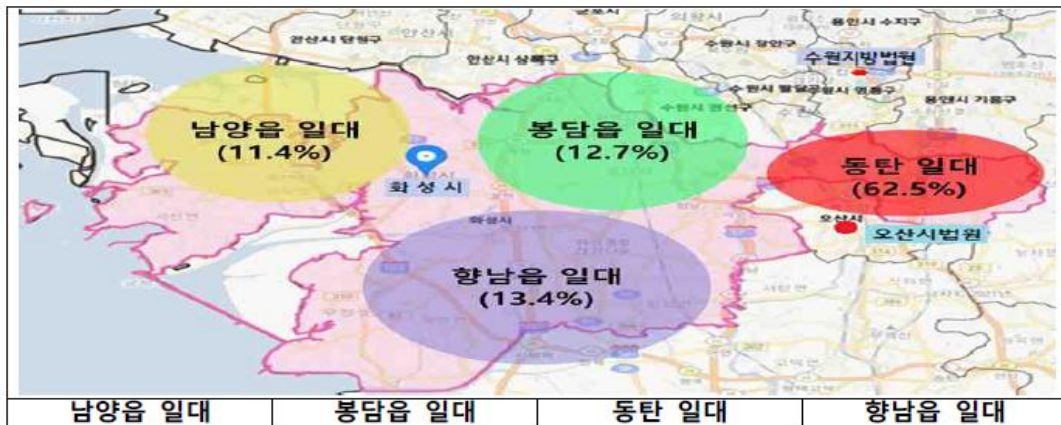
구분	인구수 (명)	면적 (㎡)	사건 수					합계	소속법 원	관할부 법상여
			소액	조정	전자 독촉	민사 독촉	즉결			
오산시법원 (현재)	1,173,998	731	5,408	223	13,005	1,340	1,687	21,663	수원지법	상주
용인시법원	1,075,566	591	3,616	183	9,152	925	1,538	15,414	수원지법	상주
화성시법원	944,342	688	4,348	179	10,456	1,077	1,356	17,416	수원지법	
광주시법원	721,238	431	3,903	139	8,470	992	1,831	15,335	성남지원	상주

2) 사법 접근성

- 화성시법원이 현재 화성시청 인근 부지에 설치된다고 전제하는 경우, 화성시법원 설치에 따른 화성시 주민들의 시·군법원 관할사건에 대한 사법 접근성 변화는 다음과 같음.
- 남양읍, 봉담읍, 향남읍 일대의 경우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오산시 법원까지 자동차로 이동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각각 40분, 26분,

32분으로 나타나나, 화성시법원까지는 각각 5분, 23분, 21분으로 예상되어 3분에서 35분 정도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남. 다만, 동탄 일대의 경우 행정복지센터에서 오산시법원까지 현재는 자동차로 19분, 대중교통으로 40분 소요되나, 화성시법원까지는 자동차로 39분, 대중교통으로 2시간 5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화성시 각 거점지역에서의 사법접근성 변화 비교>



남양읍 일대	봉담읍 일대	동탄 일대	향남읍 일대
-남양읍, 새솔동,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인구: 107,778명 (화성시 인구의 11.4%)	-봉담읍, 매송면, 비봉면, 정남면 -인구: 119,918명 (화성시 인구의 12.7%)	-진안동, 병점1,2동, 반월동, 기배동, 화산동, 동탄1~8동 -인구: 590,251명 (화성시 인구의 62.5%)	-향남읍, 우정읍, 팔탄면, 장안면, 양감면 -인구: 126,395명 (화성시 인구의 13.4%)

출발지	인구	화성시 행정복지센터↔오산시법원			화성시 행정복지센터↔화성시청		
		거리(km)	시간		거리(km)	시간	
			자동차	대중교통		자동차	대중교통
남양읍	107,778명 (11.4%)	31	40분	1시간20분	2.8	5분	19분
봉담읍	119,918명 (12.7%)	16	26분	1시간7분	18	23분	58분
동탄7동	590,251명 (62.5%)	6.8	19분	40분	35	39분	2시간5분
향남읍	126,395명 (13.4%)	17	32분	1시간	15	21분	1시간

다. 시흥시법원 신설에 따른 영향 분석³⁾

1) 관할인구 및 예상 사건 수

- 개정안에 따라 시흥시법원이 설치되는 경우 시흥시법원의 관할 인구를 추정해 보면 다음과 같음. 2023년 12월 31일 기준 시흥시법원의 관할인구는 51만 9,715명으로, 현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관할인구(142만 9,220명)의 약 36.4%에 해당함.

<개정안에 따른 시흥시법원의 관할인구>

법원	관할구역	면적(km ²)	인구(명)	비고
안산지원	안산시, 광명시, 시흥시	323	1,429,220	안산시 인구 629,308명
광명시법원	광명시	39	280,197	
시흥시법원	시흥시	135	519,715	

- 현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건 중 시흥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소액심판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사건 등은 신설 시흥시법원에서 처리될 것임.
- 인구비율(신설 시흥시법원의 관할인구는 기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관할인구의 약 36.4%)에 따라 사건 수를 추정해 보면, 2023년 12월 31일 기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소액심판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사건 등은 총 3만 1,197건이므로, 시흥시법원의 예상 사건 수는 이의 36.4%에 해당하는 1만 1,356건으로 예상됨.

3) 법원행정처 분석·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신설 시흥시법원 사건 수 추정>

구분	소액사건	조정사건	독촉사건		즉결사건	계
			전자독촉	민사독촉		
안산지원(현재)	7,505	278	16,832	1,702	4,880	31,197
광명시법원	1,134	39	2,034	238	677	4,122
시흥시법원	2,732	101	6,127	620	1,776	11,356

- 신설 시흥시법원의 관할인구(51만 9,714명)와 사건 수(1만 1,356건)를 다른 시·군법원과 비교해보면, 김해시법원(관할인구: 53만 3,659명, 사건 수: 1만 2,384건), 파주시법원(관할인구: 49만 7,753명, 사건 수: 1만 1,077건), 김포시법원(관할인구: 48만 6,172명, 사건 수: 1만 1,214건) 등과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다른 시·군법원과 관할인구 및 사건 수 비교>

구분	인구수 (명)	면적 (km ²)	사건 수					합계	소속법원	법관 상·주·여부
			소액	조정	전자 독촉	민사 독촉	즉결			
김해시법원	533,659	463	3,150	83	7,200	907	1,044	12,384	창원지법	상주
파주시법원	497,753	674	2,662	95	6,794	506	1,020	11,077	고양지원	상주
김포시법원	486,172	277	2,943	123	6,718	698	732	11,214	부천지원	상주
시흥시법원	519,715	135	2,732	101	6,127	620	1,776	11,356	안산지원	

2) 사법 접근성

- 시흥시법원이 현재 시흥시청 인근 부지에 설치된다고 전제하는 경우, 현재 시흥시청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약 11km, 자동차로는 22분, 대중교통으로는 45분 소요되는 거리만큼 떨어져 있어, 시흥시

주민들의 시·군법원 관할사건에 대한 사법접근성은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임.

<시흥시청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과의 거리 비교>



- 다만, 현재 시흥시 주민들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까지로의 사법 접근성을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등 수원지방법원 관내 시 중에서 시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보면,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보다는 접근성이 떨어지나, 하남시보다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수원지방법원 관내 시법원 미설치 지역과의 사법 접근성 비교>

구분	관할법원	관할인구 (명)	시청 ↔ 관할법원			비고
			거리(km) ³⁾	시간		
				자동차	대중교통	
시흥시	안산지원	519,715	11	22분	45분	
과천시	안양지원	81,000	5.6	15분	24분	
군포시	안양지원	261,229	6.1	17분	32분	
의왕시	안양지원	158,870	7.7	20분	37분	
하남시	성남지원	329,861	20	30분	1시간 7분	

라. 검토의견

- 개정안은 수원지방법원 관내에 화성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화성시법원을 설치하는 한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관내에 시흥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흥시법원을 설치하려는 것임.

현재 화성시의 경우 오산시법원의 관할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해당 지역의 소액심판사건과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등 시·군법원 관할사건은 오산시법원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시흥시의 경우 별도의 시법원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1심 사건을 담당하고 있음.

- 화성시법원 및 시흥시법원의 설치는 ① 화성시법원 및 시흥시법원의 관할인구 및 사건 수 규모의 적정성, ② 화성시 및 시흥시 주민들의 사법 접근성 현황과 개선의 정도, ③ 시·군법원 설치를 희망하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④ 조직 신설에 따라 수반되는 재정부담 등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먼저, 화성시법원의 경우, 신설 화성시법원의 관할인구(94만 4,342명)와 사건 수(1만 7,416건)는 각각 전국 2순위 및 1순위에 해당할 정도로 다른 시·군법원과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화성시법원이 설치(화성시청 인근 부지 설치 전제)되면, 화성시 주민들의 시·군법원 관할사건에 대한 사법접근성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화성시법원이 현재 화성시청 인근 부지에 신축된다면, 현재 화성시 주민의 상당수가 거주 중인 동탄 일대의 사법 접근성은 현 오산시법원을 이용할 때보다 오히려 낮아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다음, 시흥시법원의 경우, 신설 시흥시법원의 관할인구(51만 9,714명)와 사건 수(1만 1,356건)는 다른 시·군법원과 비교할 때 평균적으로 적정한 수준이며, 시흥시법원이 신설되면, 시흥시 주민들의 시·군법원 관할사건에 대한 사법접근성은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임.

다만, 시흥시법원이 시흥시청 인근 부지에 신설된다고 가정한다면, 현재 시흥시청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까지의 거리가 11km 정도 밖에 되지 않아 사법접근성 개선 정도가 상당히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또한, 개정안은 시행일을 2025년 3월 1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사 신축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할 때 시행일을 조금 더 유예할 필요는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참고로, 제21대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 5.

7.)는 동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법안(의안번호 제2121134호, 권칠승의원 대표발의)을 심사한 후, 화성시법원을 설치하는 내용만 받아들여, 시행일은 2029년 3월 1일로 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던 바 있음⁴⁾.

- 한편,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는 5년간 총 143억 500만원(연평균 28억 6,100만원)으로 추정됨. 이는 화성시법원 및 시흥시법원 신축 비용에 각각 68억 1,200만원, 36억 4,500만원이 소요되고, 화성시법원과 시흥시법원에는 판사 증원 없이 공무원만 각각 7명씩 순증(정원은 각 10명이지만, 3명은 기존 법원 공무원 전입으로 충원)하는 것을 가정한 것임(참고자료. 비용추계 결과 참조).

마. 관계기관 의견

- 법무부는 화성시와 시흥시에 각 시법원을 설치하여 관내 지역 주민들의 사법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입법취지에 공감하나, 법원의 설치에 관할인구 수, 접수사건 수, 타 지역과의 형평성, 재정소요, 관련 지역의 접근성 개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임.

4) 다만, 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치지 못해, 임기만료폐기되었음.

- 법원행정처는 개정안과 같이 각 시법원이 신설되는 경우 해당 지역 주민의 시법원 관할 사건에 대한 사법접근성이 일부 강화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하나, 화성시청 인근에 화성시법원을 신설하는 경우 화성시 인구의 약 62%가 밀집되어 있는 동탄 일대의 사법 접근성이 다소 악화되는 점, 시흥시청에서 현재 관할법원인 안산지원까지의 거리는 11km로 사법접근성이 크게 나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인구 50만 명 이상 시·군에 일률적으로 법원을 설치하기보다는 시·군법원 설치의 효용성, 시·군법원 설치로 인한 지역 주민의 사법 접근성 개선 정도, 지방법원 본원 또는 지원과 시·군법원 간 관할의 합리적 배분, 청사 확보 가능성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입법정책적으로 설치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071

참고자료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화성시법원 및 시흥시법원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39억 5,800만원, 2029년 7억 7,900만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143억 500만원(연평균 28억 6,1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화성시법원 및 시흥시법원 설치·운영비 (안 [별표] 2 및 [별표] 7)	3,958	4,394	4,410	764	779	14,305	2,861

- 개정안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소속으로 설치되는 화성시법원과 시흥시법원은 관할 인구수가 유사한 용인시법원, 파주시법원 규모로 각각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
- 판사의 수는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에 따라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추계에서는 판사의 증원은 고려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인건비는 추계대상에서 제외함
 - (화성시법원 증원 인원) 화성시법원 공무원 수는 용인시법원 공무원 수와 동일한 10명으로 가정하되, 화성시법원 소속 공무원 정원 10명 중 3명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입되고, 나머지 7명은 신규채용(8급 1명, 9급 6명)되는 것으로 가정함
 - (시흥시법원 증원 인원) 시흥시법원 공무원 수는 파주시법원의 정원 8명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참고하여 이보다 2명 증원한 10명으로 가정하되, 시흥시법원 소속 공무원 10명 중 3명은 시흥시를 관할하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전입되고 나머지 7명이 신규채용(8급 1명, 9급 6명)되는 것으로 가정함
- 화성시법원 및 시흥시법원의 청사는 신축을 가정하고, 2025년 3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신축 기간에는 인근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